



교육부

학점은행제 정보공시제 운영 기본계획(안)

2016. 3.

교 육 부
평생학습정책과

차 례

I.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제 개요	1
II. 정보공시제 추진 계획	2
III. 기대효과	7
IV. 추진체계 및 역할	8
V. 단계별 운영계획 및 예산	9
VI. 2016년 세부 일정 및 예산	10

【참고자료】

-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근거 법령
-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항목·범위 등

I.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제 개요

□ 추진배경
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(15.3.27) 및 동법 시행령(15.9.25)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(16.9.28)
 -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제 시행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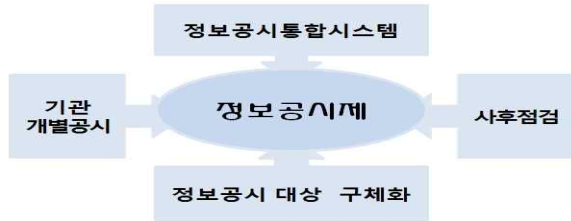
□ 정보공시제 주요내용

- (개념)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
- (법적근거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등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)
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(공시주체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(502개, '16.3월 기준)
 - ※ 국방·치안 등 정보공개가 어려운 기관·학습과정의 경우,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시 대상 제외 필요
- (공시내용) 총 8개 항목, 17개 공시 범위 (학점인정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)
 - ※ ①기관 운영규칙·시설 등 기본현황, ②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, ③학습자 현황, ④교수 또는 강사 현황, ⑤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, ⑥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, ⑦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, ⑧교육여건 및 기관운영현황 등
- (공시시기) 정기(공시정보 범위에 따라 2월, 3월, 6월, 8월, 9월), 수시 (학점인정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)

II. 정보공시제 추진 계획



❖ 정보공시제 추진 계획

정보공시 대상 구체화 + 기관 개별공시+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·운영 + 사후점검

1 정보공시 대상 구체화

- (목적)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, 정보공시 지침·양식을 개발하여 기관의 원활한 참여 유도
- 개발 절차
 - (지침·양식 개발) 대학알리미 등 유사 정보공시 지침을 참고하여 개발
 - (자문위원회 검토) 정보공시 자문위원회*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 마련

❖ 정보공시 자문위원회 (국평원)

- 구성 : 국평원, 유관기관(대교협, KEDI 등), 교육훈련기관 관계자, 전문가 등
- 기능 :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
 -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지침 및 양식 타당성 검토
 - 학점은행제 제도개선방안 등 자문 기능 -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기관간 협력 및 역할 조정 등

- (지침·양식 확정) 기관 의견 수렴(공청회 개최 등)을 거쳐 최종 확정

※ 확정 지침·양식 운영 후,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매년 지침·양식 개발 예정

< (예) 정보공시 지침·양식 개발 >

공시정보 항목	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(학점인정법 제6조의2제1항제5호)		
공시정보 범위	학습과정별 학습비(학점인정법 시행령 별표2)		
공시정보 범위 세분화	학습과정별 학습비 현황	학습비 납부제도 현황	

↓

◆ 공시지침

- 공시기관 : 교육훈련기관
- 공시내용 : 학습과정별 학생 1인당 학습비 현황 - 공시시기 : 2017년 2월
- 공시양식 : 다음 양식 적용

기준연도	학습과정	과정특성 (실습유무 등)	총정원	등록인원	학습비	실습비	비고
학습과정 평균							

◆ 작성지침

- 학습비 : 학습과정별 2017년에 책정된 학생 1인당 학습비
- 실습비 : 학습과정별 2017년 책정된 학생 1인당 실습비
- 학습과정 평균 : 전체 학습과정(학습과정별 학습비 × 학습과정별 등록인원)의 합/전체 등록인원의 합

※ 실제 지침·양식은 이와 다를 수 있음

2 개별 기관별 정보공시

- (목적)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교육훈련기관은 '16.9.28부터 정보공시 의무 수행
- 개별기관 정보공시 절차
 - (기관별 정보공시) 법령 시행일에 개별 기관은 지침·양식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(온라인), 게시판(오프라인) 등을 통해 공시
 - (공시정보 제출) 기관은 공시정보를 정보공시 통합시스템(정보공시 지원시스템)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 의무 수행

3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(학점인정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)



<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개념도 >

- (목적) 기관의 공시정보 입력(제출) 및 수요자의 기관 공시정보 비교·판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
 - 기관이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(정보공시지원시스템)과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(학점은행제 알리미)을 분리 구축
- (구축계획) '16년 시범운영('16.11월 예정)을 위한 하드웨어·시스템 우선 설비 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·구축하여 '17.9월(예정) 정식 개통
 - (하드웨어 확보) 이용현황, 동시접속자 수 등 정보공시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안정성 확보

- (입력시스템 확보) 기관의 원활한 정보입력이 가능하도록 입력 시스템은 시범 운영 전 우선 개발('16.9~10월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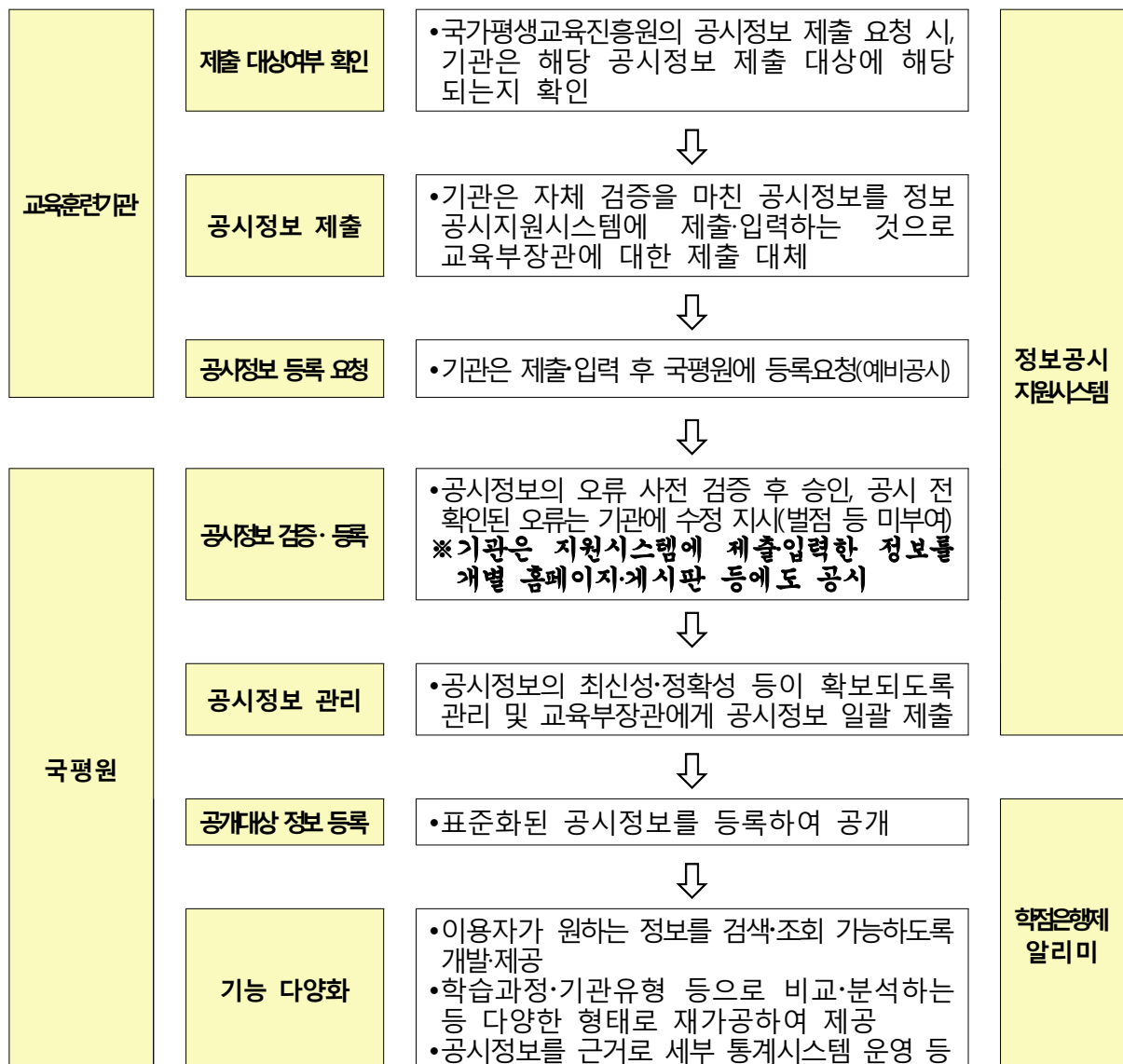
※ 학점은행제 정보시스템(국평원) 등과 연계하여 기관의 직접 입력·제출 부담 완화

- (입력정보 관리) 입력된 공시정보의 저장·관리할 수 있는 저장 공간 및 비교·분석 등 공시정보의 재가공을 위한 시스템 구비

- (학점은행제 알리미 구축) 입력된 정보 및 비교·분석 등 재가공된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별도의 웹 구성

※ 다양한 브라우저(Internet Explorer, Chrome, Safari, FireFox 등)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등 웹 표준 및 접근성 확보

○ (운영절차) 정보공시지원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알리미 운영



4 공시정보 사후확인·점검 등 (학점인정법 제6조의2 등)

□ 공시정보 조사·점검

-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조사·점검
 - (모니터링단 운영) 학습자·학부모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정보공시 운영 실태 조사('17년)

❖ 모니터링단 구성·운영 (국평원)

- 구성 : 학습자, 학부모 등 일반 수요자 30인 내외로 국평원 내 구성
- 운영방법 : 학점은행제 알리미와 개별 기관의 공시정보 비교 후 국평원에 보고
 - 사전교육 후 점검 매뉴얼 배포(주요 점검 항목 안내 등)
 - 개별기관의 공시정보 위주로 확인, 개별 홈페이지 등에 제공된 정보와도 비교 등

- (현장점검) 평가인정 학습과정 사후관리(국평원) 시 정보공시 운영현황 점검
- (오류신고제 운영) '학점은행제 알리미'에 공시오류 신고서비스를 구축하여 기관 및 학습자 등의 공시정보 오류 신고 상시접수

□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

- (시정·변경 명령) 공시정보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공시 미이행·허위 공시 기관에 대하여 시정·변경명령 등 조치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)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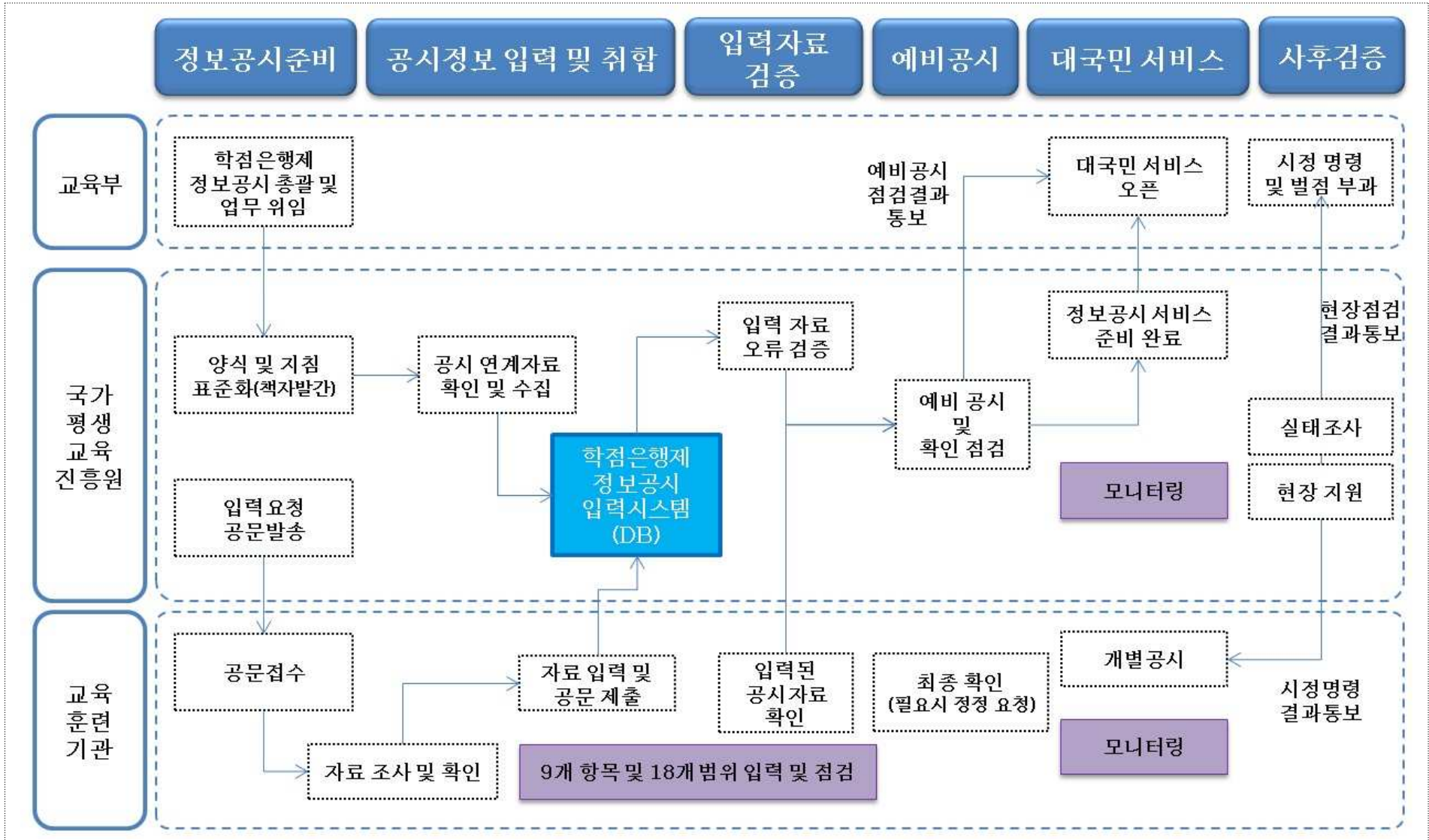
- (벌점부여) 시정·변경명령을 불이행 시, 해당 학습과정에 벌점 부여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(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1]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

구 분	위 반 사 항	위 반 내 용	횟수 별 점 수		
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정 보 공 시	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	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	5	10	15

< 정보공시제 운영 과정 >



4 정보공시제 운영 및 이용 활성화

□ 정보공시제 운영 활성화

- (공시담당자 연수) 기관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연수 실시
- (만족도 조사) 기관 및 학습자 등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·분석하여 서비스 질 제고
- (기관 대상 상담센터 운영) 학점은행제 알리미에 기관 대상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기관 담당자의 제도 이해도 증진 및 이용 편의성 제공('17년)

□ 정보공시제 이용 활성화

- (홈페이지 안내) 국립원 홈페이지 및 기관별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통한 학점은행제 알리미 이용안내
- (기타 홍보활동) SNS, 홈페이지 게시용 배너, 리플렛 등 개발·제공
- (모바일 서비스)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점은행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('17년)

III. 기대효과

□ 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한 학습권 강화

-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 제공

□ 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자발적 경쟁 유도를 통한 질 제고

- 교육훈련기관의 정보 및 운영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 상의 투명성 확보
-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훈련기관 간 자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제공

IV. 추진체계 및 역할

□ 추진체계



□ 기관별 역할

조 직	역 할
교육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정책수립·결정 등 제도 총괄 ◦ 공시정보 관리·점검을 통한 시정명령 및 벌점부여 등
국가평생교육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·운영 실행계획 수립 ◦ 교육훈련기관 공시정보 접수 및 자료요청 등 정보 수집 ◦ 정보공시 지침·양식 개발 및 개선 등 ◦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운영 ◦ 공시정보 관리·점검 후 교육부 결과 보고
정보공시 자문위원회(국평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보공시제 통합시스템 구축·운영 실행계획 심의·자문 ◦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지침 및 양식 타당성 검토 ◦ 제도개선방안 등 자문 기능 등
교육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시자료 입력, 제출 및 개별공시 ◦ 기관별 조사체계 및 관리체계 확립 등 ◦ 공시정보에 대한 문의처 운영

V.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산

1. 단계별·시기별 운영 계획

	'16년	'17년	'18년
목 표	정보공시 운영기반 구축	정보공시 운영기반 구축	정보공시 운영 활성화
공 시 정보 구 체 화	·지침 및 양식 개발·표준화 ·공시 매뉴얼 개발	·지침 및 양식 개선 ·매뉴얼 개선 ·수집 정보 확대	·지침 및 양식 개선 ·매뉴얼 개선 ·수집 정보 확대
통합시스템 구 축·운 영	·기관별 공시 정보 입력 ·학점은행제 알리미	·공시정보 관리·검증 시스템 강화 ·수집 데이터 평가체제 확립(비교 검증, 실사 검증 등) ·외부 기관 연계 검증 ·모바일 시스템 구축	·연계 기관 확대 ·통합 시스템 내 검증 체계 강화 ·통계 시스템 구축
사 후 점 검	·모니터링단 구성 ·현장점검	·모니터링단 운영 ·오류신고제 운영 ·현장점검	·모니터링단 강화 ·오류신고제 개선 ·현장점검
홍 보 및 활 성 화	·실무자 연수 및 설명회 ·공시 자료 배포 ·SNS 등을 통한 홍보	·기관 대상 상담센터 운영 ·만족도 및 설문조사 실시	·만족도 조사 강화 ·콜센터 운영

2. 중장기 소요예산 ('16~'18년도) (비공개)

VI. 2016년도 세부 일정 및 예산

1. '16년도 세부 추진일정

세부 내용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① 정보공시 구체화 및 개별공시												
연구진 구성				■								
공시항목별 세부 내용 개발 및 검토				■	■							
기관 의견수렴 및 확정					■	■						
지침 및 매뉴얼 제작 및 배포							■	■	■			
개별 기관별 정보공시									■	■	■	■
②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												
시스템 기획·설계				■	■							
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				■	■	■	■					
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								■	■	■	■	■
시스템 입력 및 오류 검증										■	■	■
시스템 개통 및 시범운영											■	■
③ 정보공시제 운영												
정보공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정보공시 관련 정책연구 추진	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관계기관 연수 및 설명회							■	■			■	■
현장 점검(사후관리)										■	■	■
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홍보		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

2. '16년도 예산 세부내역 (비공개)

<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>

제6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)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관의 운영규칙, 시설 등 기본현황
2.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
4.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
5.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
7.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8.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, 공시횟수, 그 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3.27.] 제6조의2

<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>

제8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·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.
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1.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
2. 자료 제출 일시
3.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

[본조신설 2015.9.25.] [시행일 : 2016.9.28.]

참고2

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항목·범위 등

공시정보 항목	공시정보의 범위	공시 횟수	공시 시기
1. 기관 운영규칙·시설 등 기본 현황	가.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	규칙 및 규정 제정·개정시마다	규칙 및 규정 제정·개정시마다
	나. 교사(校舍) 등 시설 현황	연 1회	2월
	다.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·설비현황	연 1회	2월
2.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	가.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	연 1회	2월
	나.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	연 1회	2월
3.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	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	연 2회	3월, 9월
4.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	가. 교수 또는 강사의 수	연 2회	3월, 9월
	나.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	연 1회	3월
	다.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	연 2회	3월, 9월
	라.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	연 1회	3월
5.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	가. 학습과정별 학습비	연 1회	2월
	나. 예산 및 결산	연 1회	(예산)6월 (결산)8월
	다. 장학금 지급 현황	연 1회	8월
6.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	위반내용 및 조치결과	조치 시 마다	조치 시 마다
7.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	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	연 1회	9월
8.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	가. 직원 수	연 1회	9월
	나. 학습비 반환 현황	연 1회	9월